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2203147)	2024. 8. 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5.11.2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5.11.18.) 상정
	이광희의원 (2209630)	2025. 4. 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7.0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5.11.18.) 상정
	성일종의원 (2210214)	2025. 4. 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7.0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5.11.18.) 상정
	서범수의원 (2213583)	2025. 10. 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5.11.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18.)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면·동 또는 구·시·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면·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시·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체육행사”를 “체육행사와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으로, “범위에서 상장”을 “범위(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에서 상장”으로, “정기총회에”를 “장의 이임식·취임식, 정기총회에”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말한다)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의 실연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 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의례적 행위 가. ~ 아. (생 략)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 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u>체육행사</u>, 각급학 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 적인 <u>범위에서 상장</u>(부상 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 위와 구·시·군단위 이상 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 · 종친회·동창회, 동호인 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u>정기총회에</u> 의례적인 범위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 ---<u>체육행사와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 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 외한다)의 장의 이임식· 취임식</u>----- ----- -----<u>범위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의 경우 연 1회에 한정한다)</u>에서 상장 -----

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 파. (생략)

<신설>

장의 이임식·취임식, 정기총회에

차. ~ 파. (현행과 같음)

하.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행사(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말한다)에 참석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u>한 사람에게 전문가(공연</u> <u>의 실연으로 월평균 총소</u> <u>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u> <u>법」 제2조제11호에 따른</u> <u>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u> <u>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u> <u>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u> <u>위</u>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